##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02.29)

#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펀드코드: 59370]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당사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 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국내 중대형 가치주 및 성장주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당사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 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국내 중대형 가치주 및 성장주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1.6600** | 0.9600 | 1.3700 | 1.6700 | 270 | 445 | 627 | 1,009 | 2,08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C1) | 없음 | **2.2000** | 1.5000 | 1.5700 | 2.2100 | 224 | 455 | 692 | 1,186 | 2,549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1.1800** | 0.4800 | 1.0100 | 1.1900 | 171 | 297 | 428 | 706 | 1,499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없음 | **1.6800** | 0.9800 | 1.1800 | 1.6890 | 172 | 349 | 533 | 919 | 2,002 |
| 수수료미징구-퇴직연금(P1) | 없음 | **1.4500** | 0.7500 | - | 1.4570 | 148 | 302 | 461 | 797 | 1,749 |
| 수수료미징구-개인연금(P2) | 없음 | **1.5200** | 0.8200 | - | 1.5300 | 156 | 317 | 484 | 835 | 1,829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Pe1 | 없음 | **1.1000** | 0.4000 | - | 1.1070 | 113 | 230 | 352 | 611 | 1,353 |

|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Pe2** | 없음 | **1.1500** | 0.4500 | - | 1.1570 | 118 | 241 | 368 | 638 | 1,411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모투자펀드보수 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4)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2024년 01월 31일(국내주식)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2023.03.01~2024.02.29 | 최근 2년(%) 2022.03.01~2024.02.29 | 최근 3년(%) 2021.03.01~2024.02.29 | 최근 5년(%) 2019.03.01~2024.02.29 | 설정일 이후 |
|---|---|---|---|---|---|---|
| 운용 | 2006-08-18 | 10.27 | -1.24 | -4.11 | 7.56 | 8.21 |
| 비교지수 | | 9.51 | -1.06 | -4.49 | 3.13 | 3.82 |
| 변동성 | | 14.46 | 17.07 | 16.68 | 20.67 | 18.89 |

주1) 비교지수: KOSPI Inde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의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 | | | 운용 경력 년수 |
|---|---|---|---|---|---|---|---|---|---|
| | | | 집합투자 기구수(개) | 운용규모 (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김재범 | 1978 | 책임 (팀장) | 14 | 2,076 | 13.41 | 1.01 | 11.35 | -0.51 | 13년 |
| 박성진 | 1991 | 책임 (대리) | 2 | 420 | 9.38 | - | | | 4년 11개월 |
| 유동옥 | 1983 | 부책임 (차장) | 21 | 4,383 | 13.20 | 1.57 | | | 9년 1개월 |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 및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은 일일 변동성이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 **투자 전략 위험** | 지배구조를 포함한 가치할인요소에 따라 시장가치가 기업의 잠재가치에 비교하여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며, 기업가치 할인요소의 축소와 그 기간의 단축을 통한 해당기업의 시장평가 제고와 중장기적인 초과수익의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목표의 달성여부는 투자전략의 성공적인 수행 및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으며, 투자목적의 달성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은 동일한 투자목적 하에 복수의 펀드 (공사모 펀드) 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동 운용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의 환매는 투자전략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table>
<tr><td></td><td colspan="3">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방법</td><td>-오후 15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br>-오후 15시30분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환매방법</td><td>-오후15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br>-오후15시30분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2">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br>-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td></tr>
<tr><td>과세</td><td colspan="3">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우리자산운용㈜ (☏ 02-2118-0500)</td></tr>
<tr><td>모집[판매]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4년 04월 05일</td><td>존속기간</td><td>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Class (종류)</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수수료</td><td>A<br>(수수료선취)</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C (수수료미징구)</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판매경로</td><td>E<br>(온라인)</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able>
</td></tr>
</table>

| | | | |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S<br>(온라인 슈퍼)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CDSC<br>(보수체감)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 I<br>(고액) | 납입금액이 50억 이상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G<br>(무권유저비용)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H<br>(주택마련)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F<br>(기관) |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br>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br>다.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 | W<br>(랩) |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
| | | P1<br>(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P2<br>(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wooriam.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wooriam.kr)